

*인쇄 페이지 열람 시 인쇄 이력이 기록됩니다.

인쇄자 : 임민우

[민원인입력사항]

신청번호	1AA-1711-212060	신청일	2017-11-24 08:57:07
신청인구분	개인		
신청인이름	임민우		
연락처		휴대전화	010-3865-7321
주소	[1403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177, 117동 1307호		
진행상황통보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이메일	rainmaker084@naver.com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위험물 저장소의 보유공지 확보 관련입니다.
민원내용보기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이고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경우 공지의 너비가 10m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유공지의 기능은 1. 위험물시설의 화재시 연소확대 방지 2. 소방활동의 공간제공 및 확보 3. 피난상 필요한 공간확보 4. 점검 및 보수 등의 공간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유공지에 일부 사면이 있을 경우 위 1번 과 3번 사항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번 과 4번 사항을 위하여 공지의 너비 10m 중 소방차 진입을 위한 3m는 평평한 평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수평으로 7m는 사면으로 해서 보유공지 10m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방활동의 공간제공 및 확보, 점검 및 보수 등의 공간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위와 같이 보유공지를 확보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위험물저장소는 창문이 없으며 문에는 자동 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대응조사과		
담당자(연락처)	김수희 (044-205-7482)		
접수일	2017-11-24 10:52:1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11-246132
답변일	2017-11-24 16:55:09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1711-21206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위험물 저장소의 보유공지 확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유공지는 소화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를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면을 포함하여 보유공지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유공지의 취지상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사면이라면 가능하나, 해당 사항은 관할 소방서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김수희 소방경(☎044-205-78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인쇄